

- '단계적 일상회복(위드코로나)' 전환에 따른 -

어린이대공원 공연·행사 시설 대관재개 계획

정부 방역지침 '단계적 일상회복 전환'에 따라 기본 방역지침을 준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여 서울어린이대공원의 공연·행사시설의 대관을 재개하고자 함

I 대관재개 관련 방역지침

□ 관련지침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4263(2021.10.29.),
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-31106(2021.11.01.)
『단계적 일상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』

□ 방역지침 기본방향

- 예방접종률 전 국민 70% 상회하여 중증·사망 예방효과 본격화
- 방향전환 : 확진자 억제(보편적 규제) → 중증환자, 사망자 억제
- 일부 고위험 시설 제외 집합금지,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완화

□ 공연·행사 관련 지침

- (1~99명)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·행사 가능
- (100~499명) 참석인원 전원 '접종완료자 등'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
 - 접종완료자 등 : 접종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
 - 100명째부터 접종완료자가 아닌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행사
 - 중수본 방역의무화 조치사항 이행(Ⅲ.세부 방역지침 참조)

II

시설 대관재개 공고계획

대관시설 ※ 근거법령 :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(이용료 별표3)

구 분	열린무대	숲속의무대
규 모	무대면적 180 m^2 무대 앞 광장 1,750 m^2	무대면적 560 m^2 관람석 8,000석
부대시설	없음	대기실 2, 안내소 1
이 용 료	기본 2시간 100,000원 / 추가 1시간당 25,000원 ※ 야간시간(19:00~22:00)은 주간의 2배	
	전기 사용 시 전기료 별도 / 입장권 발매 시 발매총액의 10% 추가 ※ 2일 이상 연속대관은 통합 대관해야하며 폐장시간(22시~05시)에 대해 부과하지 않음	
제한사항	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500명 이상 이용 제한	
기타사항	서울어린이대공원 대관시설 이용조건 준수 철저	

접수 및 이용기간

- **이용기간** : 2021.11.20.(토) ~ 2021.12.31.(금)
 - 이용기간 중 정부, 市 방역지침 변화에 따라 이용기간이 조정가능
- **접수기간** : 2021.11.10.(수) ~ 2021.11.17.(수)
 - 접수기간 중 접수한 행사를 우선 승인하고 이후 잔여기간 수시대관으로 접수
 - 행사관련 기타 문의사항 대관담당 장대엽(02-450-9356)에서 민원응대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(bigleaf@sisul.or.kr)
- 제출서류 : 홈페이지 양식참조 (https://www.sisul.or.kr/open_content/childrenpark/)

연번	제출서류	포함내용	양식여부
1	행사계획서	행사개요, 구성, 배치도, 프로그램, 조직도 등	자율양식
2	장소이용신청서	행사개요, 연락처, 차량진입, 준수사항 동의서 등	○
3	시설물 설치내역 및 안전관리계획서	시설물 설치내역, 안전관리계획, 비상시 조치사항, 원상복구계획(시설물 철거 및 쓰레기 수거방법)	○

□ 심사방법

- 별도심사 : 제출서류 서면평가(필요 시 사후 보완)

※ 대규모 공연·행사(500명 이상) 불가

- 심사위원 : 별도 위원회 구성

□ 세부 심사사항

- 심사항목

심사요소	심사내용	심사점수 (100점)		
		우수	보통	미흡
공공성	국제행사 및 지역사회 기여·협력도 등	20~16	15~11	10 이하
안전관리	행사 운영 시 안전 대책, 동선 관리 등	20~16	15~11	10 이하
민원대책	과도한 소음 발생 등 민원 대책 여부	15~11	10~6	5 이하
시설보존	시설 훼손 설치물 여부 등 시설사용 적합성	15~11	10~6	5 이하
행사내용	행사내용의 대공원 부합성 및 규모 적정성	15~11	10~6	5 이하
수행능력	주관사의 행사수행 전문성 및 능력 등	15~11	10~6	5 이하

- 점수산정 :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값

※ 최저 및 최고점수가 2개일 경우 1개만 제외

- 심사결과 : 고득점자 순서로 행사일정 배정 (실격요소가 있을 경우 제외)

※ 동점 시 공공성 > 안전관리 > 민원대책 > 시설보존 > 행사내용 > 수행능력

- 심사실격

- 심사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

-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일한 심사요소에 대하여 '미흡'으로 평가했을 경우

Ⅲ

시설대관 재개관련 세부 방역지침 준수방안

□ 세부 방역지침

- 감염관리과-31106(2021.11.01.) 「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」 붙임2 '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' 발취

○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

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

○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·행사는 아래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

- (1명~99명)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·행사가 가능

- (100명~499명) 모임·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·행사 가능

☞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·행사의 경우,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'전원'(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)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,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* 외 참여 금지 조치 必

* ^접종완료자 및 완치자, ^PCR 음성확인자, ^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→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- (결혼식(장) 등) 결혼식장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는 위 인원제한(1~499명)을 동일 적용하되,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(혼합적용 불가)

※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(수도권: 10명/수도권 외 12명)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,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

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○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,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·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*에 필수적인 모임·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

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·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·송출 등

○ 적용대상 집합·모임·행사의 준수사항

○ 적용대상 집합·모임·행사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100명 이상 모이는 집합·모임·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·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

<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수칙 >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·행사의 경우,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※ 100명째 참석자 부서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일 것 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*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 포함 - (미완료자, 예외자)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PCR음성확인자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2) 예외자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◦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확인 등 협조
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	
▶ 출입자 명부 관리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
▶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다중이 모이는 집합·모임·행사의 경우,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▶ 기타(권고사항)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◦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
※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② 각종 스포츠 대회, ③ (지역)축제 외 5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	

□ 행정사항

○ 방역지침 준수서약서 작성(별첨2 참조)

- 주최자 측 방역관리자 지정, 행사조건에 따른 세부 방역조치 계획 제출요청

□ 유의사항

- 방문 접수 시 사전에 담당자와 일정을 상의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사전답사 등을 통해 무대상태, 주변환경 및 주요 시설물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장소이용 신청서는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하시고, 해당 없는 경우 '해당없음'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이용준수사항 동의서, 대관 취소사유 체크리스트 등 주의하여 확인바랍니다
- 행사기획서에는 세부사항(행사개요, 시설물 설치내역, 안전관리, 민원대책, 청소계획 등)이 포함되어야 하며, 미흡 또는 허위작성 시 보완 또는 반려 조치될 수 있습니다
- 행사 시작 3일 전에 구체적인 안전대책, 시설물 설치내역에 관한 최종 결정사항을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- 방역지침 준수 동의서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, 미준수 시 행사중단을 요청하거나, 향후 대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대관신청 후 심사일정 및 보완요청 등 별도 안내조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
- 대관 승인 후 취소하는 주최/주관단체는 차후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

2021. 11

서울시설공단